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84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의원 : 서도원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설점검·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2024.2.22. 타법개정, 2025.10.23. 시행)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 수행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관내 장애인등록현황은 군청홈페이지 자료를 기준(2023년)으로 1만3천여명이며,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달성군에서 발생한 학대의심 사례는 9건으로 확인됨.
- 현재 지원 범위의 추계가 어려움. 추후 본 추산자료를 토대로 안 제4조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계가 필요함(안 제4조, 안 제6조)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서 도 원 (☎ 2291)